

◆ 강북구고시 제2026-91호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8-100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공청사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서울특별시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 기존 시설 노후화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주민센터부지 내 주민센터 신축을 하고자 함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.

2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

가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○ 공공청사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공공청사	주민 센터	강북구 수유동 568-100번지 일대	-	증)737	737	-	

○ 건축물의 범위(건폐율,용적률,높이) 결정(신설) 조서

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	비고
60% 이하	200% 이하	7층 이하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
○ 결정 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	비고
공공청사	○ 공공청사(주민센터) 신설 - 면적: 737㎡	○ 기존 시설 노후화 및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주민센터부지 내 주민센터 신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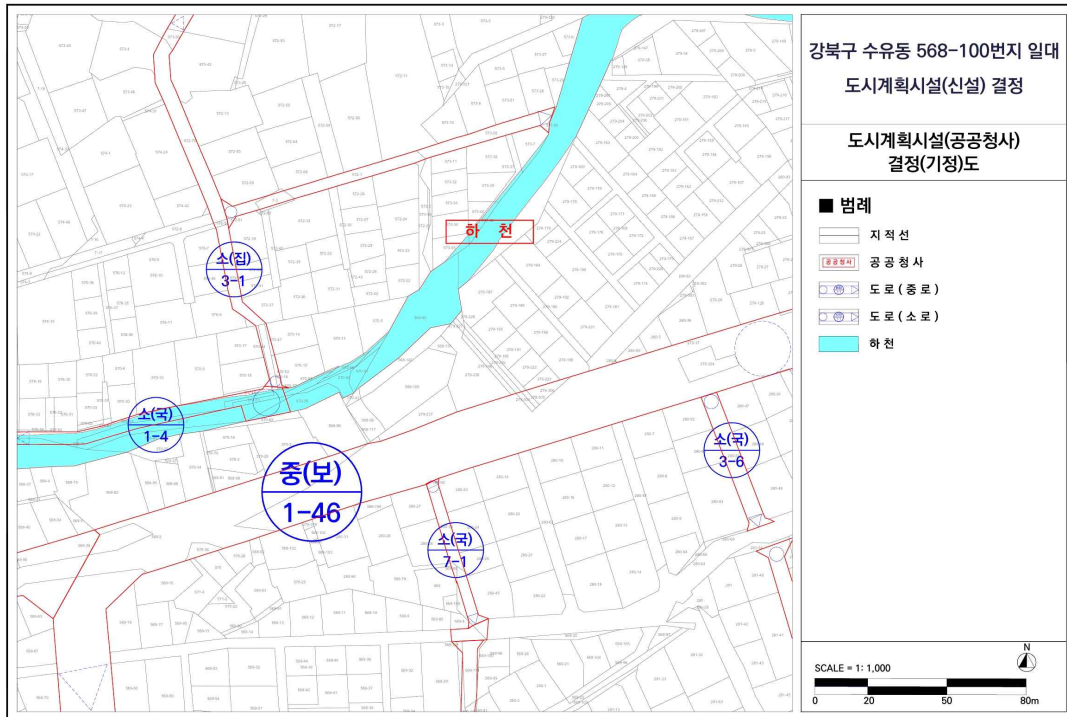
3. 관계도면 :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
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☎02-901-6844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<https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]



[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]

